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56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권영진·김상훈·박충권

엄태영 · 박형수 · 이만희

조지연 • 윤재옥 • 김도읍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보장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업한 경우에"를 "실업 등을 한 경우에"로 한다.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6조제1항제1 호의2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 제1조(목적) | | |
|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 | | | |
| 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 | | | |
| 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 | | | |
| 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 | | | |
| 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 | | | |
| 이 <u>실업한 경우에</u> 생활에 필요 | <u>실업 등을 한 경우에</u> | | |
| 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 | | | |
| 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 | | | |
| 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 | | |
|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 | | |
| 다. | | | |
|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 | |
| 개정법률 | 개정법률 | | |
|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
|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 | | |
|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 | | |
|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 | | |
|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 | |
|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 | | |
|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 | |
|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략)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생략)

<신 설>

(생략)
 ②·③ (생략)

| |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기 | - • |
|---|-------------------|----------|
| |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닌 | <u>}</u> |
| | 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 | <u>8</u> |
| | 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시 | <u>}</u> |
| | <u>산휴가</u> | _ |
| | | _ |
| | | _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 제 | 76조(지급 기간 등) ① | _ |
| | | _ |
| | | _ |
| | | _ |
| | | _ |
| | | _ |
| |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 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피 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한다.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② (생 략)

| 법듈 | 제20519호 | 고용보험! | 법 일부 |
|------------|----------|--------------|-------------|
| 개정병 | 법률 | | |
| 제772 | 조(준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배우자</u> | 출산휴 |
| <u>가,</u> | 난임치료 | 후가 또는 | 배우자 |
| <u>유</u> ረ | 산 • 사산휴> | <u>7}</u> | ·- . |
| 2 | (현행과 같 | () | |
| | | | |